

#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4. 선행교육 Q & A

**Q. 0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Q. 02**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 고등학교 내용을 중학교에서 편성하는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4. 선행교육 Q & A

Q. 0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 04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1**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02**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를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경우,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 03**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4

**동일 학년에서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로 가져 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도계획표에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Q. 05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Q. 06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7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08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9

중3과 고1을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Q. 10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2.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Q & A

Q. 01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충실한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 등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교 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02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 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진도가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 학기 안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2.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Q & A

Q. 03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 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0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학 단계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05

자유학기(년)제를 운영하며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2.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Q & A

Q. 06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07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Q. 08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종 대회(영어연극 대회, 에세이쓰기 대회 등) 및 각종 교내 대회(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골든벨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교내외 대회 참여를 위해 학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학교)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 3.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1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Q. 02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해설 부분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 3.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3 어떤 경우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나요?**

A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Q. 04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05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은 언제 하나요?**

A

2019년 4월 교육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해당 학교에 지정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 3.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6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 시험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의 평가나 선발 등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Q. 07

방과후학교를 민간기관(업체) 위탁 또는 개인 외부강사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어떤 관리와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위탁계약 시 방과후학교 관련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와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를 충분히 안내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